

접 수	의안과 - (20 . . . . : )
-----	--------------------------

# 수 신 : 의 장

제 목 : 인터넷 광고 규제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위의 청원을 국회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붙 임 1. 청원소개 의견서 3부  
2. 청 원 서 3부. 끝.

2017년 7월 30일

청 원 인

성 명 :

주 소 :

전화번호 :

소 개 의 원 :

(인) 외

인

						의 장
담당자	청원담당	과 장	국 장	차 장	총 장	

# 청원소개의견서

청원인	주소 :
	성명 : 이 선 우
건명	인터넷 광고 규제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소개년월일	2017년 7월 30일
<p>소개의견</p> <p>청원인 이선우는 대한민국 청소년 의회의 제15회 정기회의 청소년 의원입니다.</p> <p>대한민국 청소년 의회는 2017년 7월, 제 15회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lt; 인터넷 광고 규제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gt;을 발의하였습니다.</p> <p>대다수의 사람은 거의 모든 생활을 인터넷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 중 어린이와 청소년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데, 그에 반해 인터넷에 게시되는 광고들은 이들이 보기에 부적절한 광고들이 많습니다. 그 예로는 술, 대부업, 음란물, 또 비행을 조장하는 내용이 있습니다.</p> <p>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녹색소비자연대에 의뢰해 청소년 200명,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유해성 인터넷 광고에 대한 인식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91%가 유해성 인터넷 광고에 쉽게 접근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적 욕구를 자극하는 음란한 것이 92.5%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현재 방송법의 경우는 시간대별 주요 시청 연령층과 광고 품목에 따라 규제를 적절히 하는 반면, 인터넷 광고에 대한 규제는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는 청소년들이 건전한 인터넷 생활을 하는 데 불편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인터넷 광고에 규제에 대한 법안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제44조의11(인터넷 광고의 제한)① 어떤 사이트의 이용 연령층 과반이 만 19세 이하일 때와 어린이, 청소년을 목적으로 하는 사이트는 청소년 보호법에서 정의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를 일체 금지한다. 어떤 사이트의 이용 연령층 과반이 만 19세 이상일 때 청소년 보호법에서 정의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를 각 목의 해당하는 시간에 광고를 제한한다.” 이를 통해 중독성 물질, 음란물, 또는 비행을 조장하는 등 어린이나 청소년층에게 유해한 매체로 인식될 수 있는 광고들을 부분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어린이 및 청소년층의 생활과 인터넷 사용을 건전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나아가 청소년 및 어린이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거나 가정이나 교육기관에서 성교육을 받기 전에 잘못된 성 지식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법안을 통해 국가가 청소년에게 건전한 생활을 보장하여 국가가 기본적으로 지녀야 할 교육의 의무를 보다 성실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으며 나아가 인터넷에 대한 전 국민적 인식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법안을 상정합니다.</p> <p>청소년 의회의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p> <p>다음과 같은 법안을 개정할 것을 요구합니다.</p>	

제5장 정보통신망에서의 이용자 보호 등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9. 혼인매개, 이성교제 소개업에 대한 정보. 다만,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국내 결혼중개업은 제외
  10. 점술, 심령술, 사주, 관상등의 감정 및 민속신앙과 관련된 내용의 정보
  12. 금융관련법령에 의해 인·허가받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은 금융업

제44조의11(인터넷 광고의 제한)

- ① 어떤 사이트의 이용 연령층 과반이 만 19세 이하일 때와 어린이, 청소년을 목적으로 하는 사이트는
1. 청소년 보호법에서 정의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를 일체 금지한다.
- ② 어떤 사이트의 이용 연령층 과반이 만 19세 이상일 때
1. 청소년 보호법에서 정의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를 각목의 해당하는 시간에 광고를 제한한다.
  2. 담배, 주류 및 중독성 물질
- 가. 7:00 - 22:00
3. 대부업
- 가. 평일 : 7:00 - 9:00, 13:00 - 22:00
- 나. 토요일 및 공휴일 : 7:00 - 22:00

# 청원서

## 1. 제안이유

현재 인터넷 사용이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대다수의 사람은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얻고, 업무를 하는 등 거의 모든 생활을 인터넷에 의존하고 있다. 인터넷 이용자 중 어린이와 청소년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데, 그에 반해 인터넷에 게시되는 광고들은 이들이 보기에 부적절한 광고들이 많다. 그 예로는 술, 대부업, 음란물, 또는 비행을 조장하는 내용이 있다.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 따르면, 대다수의 사람이 선정적인 인터넷 광고가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했다. 청소년 200명·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선정성 인터넷 광고에 대한 인식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91%가 유해성 인터넷 광고에 쉽게 접근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보호법 유해 매체물 심의기준에 따른 통계청의 통계에 따르면 성적 욕구를 자극하는 음란한 것이 92.5%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현재 방송법의 경우는 시간대별 주요 시청 연령층과 광고 품목에 따라 규제를 적절히 하는 반면, 인터넷 광고에 대한 규제는 그 심각성에 비해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인터넷 광고에 규제에 대한 개정안을 제안하는 바이다.

## 2. 주요골자

제5장 정보통신망에서의 이용자 보호 등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9. 혼인매개, 이성교제 소개업에 대한 정보. 다만,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국내 결혼중개업은 제외

10. 점술, 심령술, 사주, 관상등의 감정 및 민속신앙과 관련된 내용의 정보

12. 금융관련법령에 의해 인·허가받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은 금융업

제44조의11(인터넷 광고의 제한)

① 어떤 사이트의 이용 연령층 과반이 만 19세 이하일 때와 어린이, 청소년을 목적으로 하는 사이트는

1. 청소년 보호법에서 정의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를 일체 금지한다.

② 어떤 사이트의 이용 연령층 과반이 만 19세 이상일 때

1. 청소년 보호법에서 정의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를 각목의 해당하는 시간에 광고를 제한한다.

2. 담배, 주류 및 중독성 물질

가. 7:00 - 22:00

3. 대부업

가. 평일 : 7:00 - 9:00, 13:00 - 22:00

나. 토요일 및 공휴일 : 7:00 - 22:00

현행	개정안
<p>신설</p> <p>제74조(벌칙)</p> <p>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p> <p>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p> <p>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p>	<p>제44조의11(인터넷 광고의 제한)</p> <p>① 어떤 사이트의 이용 연령층 과반이 만 19세 이하일 때와 어린이, 청소년을 목적으로 하는 사이트는</p> <p>1. 청소년 보호법에서 정의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를 일체 금지한다.</p> <p>② 어떤 사이트의 이용 연령층 과반이 만 19세 이상일 때</p> <p>1. 청소년 보호법에서 정의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를 각 목의 해당하는 시간에 광고를 제한한다.</p> <p>2. 담배, 주류 및 중독성 물질 가. 7:00 - 22:00</p> <p>3. 대부업 가. 평일 : 7:00 - 9:00, 13:00 - 22:00 나. 토요일 및 공휴일 : 7:00 - 22:00</p> <p>4. 청소년보호법에 의거하여 청소년유해매체로 심의된 것 가. 7:00 - 22:00</p> <p>제74조(벌칙)</p> <p>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p> <p><b>2. &lt;삭제&gt;</b></p> <p>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p>

- 도달하게 한 자
4.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
  5. 삭제 <2014.5.28.>
  6.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7.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7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삭제
2. 제4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 2의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 상황을 이용하여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3. 제5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그 업무를 수행한 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알선·중개·권유·광고한 자
  - 가. 재화등의 판매·제공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
  - 나.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등을 구매·이용하도록 한 후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구매·

- 도달하게 한 자
4.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
  5. 삭제 <2014.5.28.>
  6.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7.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7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삭제
2. 제4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 2의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 상황을 이용하여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3. 제5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그 업무를 수행한 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알선·중개·권유·광고한 자
  - 가. 재화등의 판매·제공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
  - 나.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등을 구매·이용하도록 한 후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구매·

이용한 재화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  
5. 제66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이용한 재화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  
5. 제66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6.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청원인 성명 : 이 선 우

청원인 주소 :